

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『건강진단(잠복결핵)』 계획(안)

1 건강진단(잠복결핵) 개요

1. 건강진단 실시 의무 「산업안전보건법 참고」

○ 건강진단 실시(제129조)

-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(이하 ‘일반건강진단’)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(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)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-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

○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(제133조)

- 예술강사(근로자)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(사업주)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 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‘일반건강진단’ 은 1차 건강진단과 2차 건강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, 2차 건강진단의 경우 1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수검자에 한하여 진행

2.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19조에 따라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,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예술강사에게 법적 제재로 과태료 부과. 따라서, 예술강사의 건강진단 실시와 결과 조치 이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예술강사(근로자) 또한 건강진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필요

[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]

구분	근거법조문	과태료 금액	과태료 총한도
사업주	법 제175조 제4항제7호	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(1차), 20만원(2차), 30만원(3차) ※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	1,000만원 이하
근로자	법 제175조 제6항제3호	10만원(1차), 20만원(2차), 30만원(3차) ※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	300만원 이하

3. 잠복결핵감염 검진 「결핵예방법 참고」

- 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되어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는 기간(2021~)동안 1회만 검진 실시하면 됨

2 건강진단(잠복결핵) 실시안내

1. 건강진단(잠복결핵) 실시대상자

- 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’ 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예술강사
 - ※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후, 근로계약 기간 내 수검
 - ※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계약기간 이전 수검 불인정, 건강진단(잠복결핵) 비용 지급 불가
 - ※ 중복 출강 예술강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1회 수검 및 비용 지급 가능

* 중복 출강 예술강사란?

-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(아동분야 예술강사) 및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(학교예술강사) 모두 출강하는 예술강사

2. 검진 면제대상자

- 예술강사 중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 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
- 강사가 타 직장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상 직장건강검진을 받은 경우

3. 검진 실시기간

- 실시기간: 2024년 3월 ~ 12월(연 1회 실시)
 - ※ 건강진단은 해당연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기간 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

3 건강진단(잠복결핵) 실시방법

1. 건강진단(잠복결핵) 병원 이용방법

연번	검진 구분	주요내용
1	지정병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운영기관에서 건강진단 병원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 실시를 원칙으로 함※ 24년도 운영기관 지정병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한국건강관리협회(광주 서구 대남대로 432)- 광주현대병원(광주 북구 설죽로 291)- 서광병원(광주 서구 금화로 59번길 6)- 광주수원병원(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70)
2	개별병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별도의 지정 및 계약체결 없이 예술강사 개별적으로 건강진단병원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
3	면제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진단 실시자○ 타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자

2. 건강진단(잠복결핵) 실시방법

구분	건강진단	잠복결핵
수검대상	근로계약 체결자	1. 근로계약 체결자 중 신규강사 2. 근로계약 체결자 중 21~23년 미수검자
수검결과	*온라인시스템(Aschool) 등록	
	1. 건강진단 실시 확인서 2. 진료 영수증(실비지원 필요시)	1. 잠복결핵검진 결과지 2. 진료 영수증(실비지원 필요시)
※ 온라인시스템 등록방법 - 온라인시스템(Aschool.arte.or.kr) 로그인 > 인사/복무 > 건강진단(잠복결핵) 관리 > 등록 ※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(직장제출용) 발급 방법 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/) > 건강iN > 건강검진정보		
수검방법	지정병원/개별병원 이용	지정병원 이용 ※ 지정병원(한국건강관리협회)
수검 비용지원	47,000원	60,000원
기타사항	※ 수검비용 지급기준 금액 초과분은 수검자 개별 부담 ※ 실시 확인서(결과통보서)는 검진일, 이름, 생년월일이 기재된 앞면만 제출 ※ 선발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강사는 선발지역 운영기관으로 제출	

3. 건강진단 실시항목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98조 제1항에 규정된 5가지 항목

-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과거병력, 작업경력 및 자각·타각증상(시진·촉진·청진 및 문진)
 2. 혈압·혈당·요당·요단백 및 빈혈검사
 3. 체중·시력 및 청력
 4. 흉부방사선 촬영
 5. AST(SGOT) 및 ALT(SGPT), γ -GTP 및 총콜레스테롤(대상자 한정)
-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· γ -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,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, 검사항목,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, 실시방법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※ 구강검진 실시여부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에 따르면 검사항목에 구강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